

『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』 시행 공고

『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』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3. 4.
고용노동부 장관

1 사업 개요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함

2 세부 사항

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
- (지원대상) '22.1.1.~'22.12.16.까지 다음의 사유로 **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**

「(지원요건)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」

- 가.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**코로나19**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(擬似)환자,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나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소속된 **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** 등이 **코로나19** 관련하여 **개학연기, 휴업·휴원·휴교**를 실시하거나 **원격수업, 격일(주) 등원·등교·통원, 분반제 운영**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(원)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(방학기간은 지원 제외)
- 다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**코로나19** 관련 **등교, 등원,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**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(방학기간은 지원 제외)
- 라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**코로나19** 관련 **자가격리 대상**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2 지원내용

- (지원금액) 가족돌봄휴가 **1일당 5만원** 지급(시간비례,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(지원일수) 근로자 **1인당 최대 10일 이내**(500,000원 이내)

3 신청기간: 2022. 3. 21.(월) ~ 2022. 12. 16.(금)

* 단, 신청기간 내이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
4 신청방법

-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,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
 - (온라인)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
 - (우편신청)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
- * '22.12.16.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(18:00)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

5 지원금 지급

- (결정)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결정 및 통지
 - 단,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(1회)
- (지급)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

6 부정수급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
 - * (예)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
-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, 「형법」 제231조(사문서 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고발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7 기타 참고사항

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
-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(1회) 되거나, 계속 미제출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.3.21.부터 콜센터(1350)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을 통해 확인 가능

1 필수서류

-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
-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-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-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(사업장 작성)
- ⑥ 장애인 증명서 (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)
 - ※ 고용노동부 누리집(인터넷)으로 신청시 ①, ②,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

2 추가 입증서류(각 사유별)

-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, 감염병 의사(擬似)환자,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
- ② 휴원·휴교,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
-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, 등원,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
-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
- ⑤ (필요시)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
 - ※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